

# 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 
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의안 번호	450
----------	-----

2024. 6. 11.  
도시교통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5. 31. / 김상수 의원 등 8명  
나. 회부일자 : 2024. 5. 31.  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4. 6. 11.

## 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도로에 불법주정차 되어있는 차량을 감시하고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함.

나. 주요내용

- 「주차장법」을 「도로교통법」으로 개정하고자 함. (안 제5조)

## 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조공선)

- 본 조례 개정안은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을 야기하는 차량들에 대하여 시민감시단의 활동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, 시민감시단의 활동을 통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및 교통 혼잡을 줄이고 더 안전한

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되며, 상위법 저촉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#### 4. 질의·답변 요지

○ 회의록 참고

#### 5. 토론요지

○ 없음

#### 6. 심사결과

○ 「원안가결」

#### 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붙임 :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.